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회의 명칭은 “강원도박물관협의회” (이하 “본회” 라 한다.[국제명칭은 THE MUSEUM'S ASSOCIATION OF GANGWON PROVINCIAL(MAGP)].

제2조 (소재지) 본회의 사무소는 강원도 내에 둔다.

제3조 (목적) 본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 협의회로서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강원도 내의 박물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사업)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강원도내 박물관·미술관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
2. 강원도내 박물관·미술관과의 정보교류 및 홍보사업
3. 연구발표회, 학술지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
4. 강원도내 박물관·미술관의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
5. 강원도내 박물관·미술관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사업
6. 박물관·미술관과 관련된 강원도지사(시장·군수 포함)의 위탁 사무
7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
제5조 (수익사업)

-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필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②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 (이익의 제공)

-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-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.

제2장 회 원

제7조 (회원의 자격)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기관으로써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
1. 정회원 : 해당 관청에 등록된 강원도 소재의 박물관·미술관
2. 준회원 : 강원도 소재 미등록된 박물관·미술관(등록을 유도한다)
3. 명예회원 : 회원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직 관장, 학예사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

4. 특별회원 :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 이사회 의결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
② 본회 회원의 가입요건, 절차 등은 필요한 경우 운영내규로 정한다.

제8조 (회원의 권리)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 준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.

제9조 (회원의 의무)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 이행
3. 입회비, 연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

제10조 (회원의 자격 상실) ①본회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회원이 본회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였을 때
2. 회원 기관이 해산되었을 때

②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본회에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이나 그 밖의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11조 (회원의 상벌)

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제명, 견책,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